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 - 127호

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9호(2009.10.29)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34호(2011.05.26)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2-62호(2012.03.22)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2-197호(2013.12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45호(2015.08.20.)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-104호(2019. 7. 18)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고시 된 신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·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9월 5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- 결정취지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서, “신수1주택재건축정비구역”과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

2. 위치 및 면적

구 분	어린이공원	소 공 원	비고
위 치	마포구 신수동 95-5일대	마포구 노고산동 132-1일대	
면 적	3,792.2㎡	449.1㎡	

-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조서·도면 : 개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-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(☎02-3153-9550)